

## 7. '92 稅法施行令 改正(案)

### 세법시행령 개정배경

-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
- 그동안의 경제·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납세편의 도모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등 9개 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

### 개정대상 시행령

- 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- ② 소득세법시행령
- ③ 법인세법시행령
- ④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- ⑤ 상속세법시행령
-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
- ⑦ 부가가치세법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
- ⑧ 특별소비세법시행령
- ⑨ 국제징수법시행령

### ※ 추진계획 및 시행시기

- 12월중 경제장관회의, 국무회의에 상정
- '93. 1. 1부터 시행

# I.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

## 1.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 연장

현행	개정안
-대상투자 ○중소기업 : 모든 기계설비 ○대기업 : 기술개발,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(자동화설비) -공제율 ○국산투자금액의 10% -시행기간 ○'89. 7. 1. ~ '92. 12. 31.	좌동  -시행기간 ○'93. 6. 30까지 6개월 연장

### <개정이유>

-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회복 도모

### <최근 설비투자 추이>

구분	'91		'92	
	상반기	3/4 누계	상반기	3/4 누계
· 전 산업	15.7%	12.5%	6.4%	3.0%
· 제조업	10.6%	-	△ 3.8%	-
· 비제조업	20.7%	-	15.4%	-

※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.

## 2.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인상

현	행	개	정	안
-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○ 일반수출 : 수출액의 1% ○ 특례수출 : 수출액의 2% ※ 특례수출 · 중소기업수출, 무역적자국가 및 총수출액 10%미만 국가에의 수출등		-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1%P 상향조정 ○ 일반수출 : 수출액의 1% (고유상표 2%) ○ 특례수출 : 수출액의 2% (고유상표 3%)		

### <개정이유>

- 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의 경우 주문자 상표에 의한 수출(OEM수출)에 비해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대지원

※ 수출액중 자사고유상표에 의한 수출비중('91) : 47.4%

## 3.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확대

현	행	개	정	안
- 5년간 50%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○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-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○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- 기술개발준비금이 우대되는 기술집약산업 ○ 프로그램개발업 및 관련서비스업 - 초과가동 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대상 ○ 제조·광업·전기가스업의 기계장치를 12시간이상 초과 가동시 20~50% 특별상각 허용		- 표준산업분류표상 「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(72)」으로 확대 ○ 컴퓨터 설비 자문업(721) ○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업(722) ○ 자료처리업(723) ○ 데이터베이스업(724)  - 「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」 추가		

<개정이유>

-정보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

**4. 공해방지시설의 범위확대**

현	행	개	정	안
- 대기·수질오염·소음·진동방지시설 등 “공해방지시설”에 대해서는 10% 투자세액공제 허용		-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추가		○ 축산폐수정화시설, 오수정화시설, 방음·방진시설

<개정이유>

-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

-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방음·방진시설은 소음·진동방지시설과 그 성격이 유사

**Ⅱ.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합리적 보완**

**1. 공해공장 부속토지**

현	행	개	정	안
- 공장용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공장부속토지에 해당 ⇒ 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초과토지와 공장밖의 토지는 유효토지에 해당		- 공해공장 인근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장 밖의 인접토지를 취득한 경우 「공장입지 기준면적범위내」에서는 공장용 부속토지를 인정		

<개정이유>

-공해배출공장 인접지역의 경우

- 주거등 생활용지로서 사용이 부적절하여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해공장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며

○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곤란함.

※ '90. 9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한 사항

## 2. 특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

### 가. 창고용 건축물, 위험물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

현행	개정안
-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 적용 ○ 기준면적 : 다음중 적은면적 · 건축물 용도지역별 바닥면적 <sup>×</sup> 적용배율 · 건축연면적 ÷ 용적율 × 5 ○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%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	- 창고용 건축물, 위험물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부속 토지 기준 신설 { 건축물 용도지역별 바닥면적 <sup>×</sup> 적용배율 } 을 적용 ○ 「용적율기준」 및 「건축물가액비율기준」은 적용하지 아니함.

#### <개정이유>

- 창고, 자동차정비공장, 위험물저장시설의 경우는 그 특성상 건물의 건축 높이가 제한되므로 「용적율기준」과 「건축물가액비율」의 적용이 어려움

### 나. 위험물 저장시설부속토지 기준면적

현행	개정안
- 석유, 가스등 위험물저장·보관·판매 시설물 부속토지의 경우 ○ 인허가조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.1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○ 그러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%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	- 위험물 저장시설부속토지에 대하여는 ○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가액비율 10% 이상 요건 적용배제 ⇒ 인·허가조건상 최소면적의 1.1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

〈개정이유〉

- 위험물 저장시설은 인·허가조건상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,
  - 시설의 성질상 고층으로 건축하기가 곤란하므로 건물가액비율 10%요건을 갖출 수 없음.

**3.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**

가.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전부터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준보전임야

현	행	개	정	안
-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제외 ⇒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		-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		

※ 임야의 구분

- 보전임지 : 계속하여 임야로 사용
  - 경사도 36도 이상인 임야
  - 경사도 21~35도로서 입목본수는 51% 이상인 임야
- 준보전임지 : 산림자원조성, 산업용지개발, 농어민소득기반 확대등 다목적으로 이용
  - 경사도 21~35로서 입목본수도 51% 미만인 임야
  - 경사도 21도 미만인 임야

〈개정이유〉

-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전부터 “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준보전임야”의 경우
  - 당초부터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
  - 타 용도로 변경시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나. 상속임야

현	행	개	정	안
-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⇒ 상속임야에 대해서는 농지와 같은 유예기간 없음.		- 상속임야에 대하여도 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		

<개정이유>

- “상속임야”의 경우
  - 농지의 상속시와 같이 유예기간 필요

4.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

가.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

현	행	개	정	안
-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 ○ 다만, 편입전 6월이상 자경하던 농지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 (⇒6월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는 1년간 유예적용을 받을 수 없음)		○ 자경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, 이농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		

- ※ 재충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
  - 피상속인이 2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5년간 제외
  - 2년이상 자경하던 자가 이농시 당해농지는 2년간 제외

<개정이유>

- 상속농지,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편입되는 것은

○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.

나.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확대

현	행	개	정	안
	- 거주지와 동일한 시·구·읍·면(연접 시·구·읍·면 포함) 또는 농지의 거주지로부터 8km(통작거리)이내의 지역안에 있는 자경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			- 통작거리를 「8km」에서 「20km」로 확대

※ '91. 9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 통작거리(8km→20km)와 일치

5. 염전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

현	행	개	정	안
	- 염전의 경우 ○ 토지가액(공시지가기준)에 대한 ○ 1년간의 염전사업 수입금액의 비율이 4%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(⇒4% 미만인 염전은 유휴토지에 해당)			- 1ha당 연간 염생산량이 35톤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⇒ 1ha당 연간 35톤미만 생산하는 염전은 유휴토지에 해당

<개정이유>

- 염전 수입금액은 생산량이나 수요등에 따라 연도별로 등락이 있는 반면
  - 염전의 토지가액(공시지가 기준)은 매년 조정되어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
  - 염생산량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함.
- 실제 염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가액(공시지가 기준)이 대폭 상승하게 되면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사례 방지

6. 법령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 토지



가. 건축법등에 의한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과세제외

현	행	개	정	안
- 토지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		-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공공공지해제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		

※ 공공공지 :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목적으로 건축등을 하지않고 공지로 보존해야 하는 토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지정

<개정이유>

-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건축법등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며 건축허가시 건축가능 대지면적에서도 제외.

나. 산업합리화계획상 처분대상 토지

현	행	개	정	안
	<신 설>	-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일정기한내 처분하기로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⇒ 일정기한내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희토지로 보아 과세		

<개정이유>

-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처분대상으로 된 토지는 사실상 건축등 개발이 곤란

**7. 건축물부속토지판정기준이 되는 용적율 · 건물가액비율등의 적용시점**

가. 용적율 · 기준공장면적율등의 적용시점

현행	개정안
<p>- 공장 및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계산시</p> <p>○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용적율·용도지역별 적용배율·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</p>	<p>- 당해 건축물취득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용적율·용도지역별 적용배율·기준공장 면적율중 넓은 면적이 산출되는 율을 적용</p>

※ 부속토지면적 계산기준

- 공장 부속 토지 :  $\text{공장연면적} \div \text{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} \times 1.1$
- 건축물 부속 토지 :  $\text{건축물바닥면적} \times \text{용도지역별적용배율}$  } 적은  
 $\text{건축물연면적} \div \text{용적율} \times 5$  } 면적

<개정이유>

-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, 그후 기준공장면적율, 용적율 및 용도지역별적용배율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 방지

나.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 계산시기

현행	개정안
<p>-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「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%」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</p>	<p>- 당해 건축물 「취득일」 현재 또는 「과세기간종료일」 현재 10% 이상인 경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</p>

<개정이유>

-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10% 요건을 갖추었으나
- 그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됨에 따라
- 10%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방지

## 8.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진행기준

현행	개정안
<p>-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신축중인 토지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예정기간 경과일수에 비례하여</li> <li>○ 그 이상 공사진행시(①&gt;②)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</li> </ul> <p>① 공사비지출액에 의한 공사 완성 비율 : <math>\frac{\text{착공후 공사비지출액}}{\text{총공사예정원가}}</math></p> <p>② 공사기간 경과비율 : <math>\frac{\text{착공후 경과일수}}{\text{총공사 예정일수}}</math></p>	<p>-과세기간종료일 현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① 공사비지출액에 의한 공사완성비율」이</li> <li>○ 「②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50%」이상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.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현행 공사진행기준에 의할 경우
  - 공사비가 건축예정기간에 비례하여 그 이상 투입되어야 하나
  - 통상적으로 건설초기에는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므로 사실상 적용 곤란

## 9.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에 포함

현행	개정안
<p>-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과 다른사업 겸업시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봄</li> </ul>	<p>-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축산업을 주업에 포함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은 가축의 개량·증식등 축산업이 기본업무임.

## 10.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

현	행	개	정	안
- 동일인이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납세		-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		

<개정이유>

-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의 지가(공시지가)는 필지별로 결정 고시됨.

## 11. 예정통지기한 연장

현	행	개	정	안
-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종료후 다음해 7. 1~7.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에 예정통지		- 예정통지기한을 7.1~8.10까지로 10일간 연장		

※ 납세절차

- 예정통지 : 7. 1~7. 31
- 고지전심사청구 : 예정통지후 15일내청구⇒30일내 결정
- 자진신고 : 9. 30까지⇒11월말까지 고지납부

<개정이유>

- 주소지변경,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가 부득이 늦어지는 경우 감안

## Ⅲ. 상속·증여세제의 보강

### 1. 종자시 특수관계주주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과세

현	행	개	정	안
-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		-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하지 않더라도		
○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		○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		
○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		○ 그 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		

<개정이유>

- 일부 주주가 실권하게 되면 이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
-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을 세금없이 사전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.

2. 비상장주식 평가제도개선

현	행	개	정	안
-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은 당해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가액 평가후				
○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: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		○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:		위 평가액에서 10%를 가산한 가액으로 과세
○ 기타주주 소유주식 : 위 평가액에서 10%를 차감한 가액으로 과세		○ 기타주주 소유주식 :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		

※ 지배주주 :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자

<개정이유>

- 상관행상 지배주주는

- 사실상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
- 지배주주 소유주식은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10%정도 높게 평가되고 있음.

### 3.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확대

현	행	개	정	안
-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·구·읍·면(연접 시·구·읍·면포함) 또는 거주지로부터 8km(통작거리)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·초지·산림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 공제적용		- 통작거리를 「8km」에서 「20km」로 확대		

※ 통지·초지·산림지 상속공제(상속세법 11의 3)

- 공제대상 : 농지 9,000평, 초지 45,000평, 산림지 90,000평
- 공제한도 : 1억원

#### <개정이유>

- '91. 9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 통작거리와 일치
  - 종전 : 통작가능거리를 도보기준 8km
  - 개정 : 교통발달 및 도로사정 개선을 감안 20km로 확대

### 4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

현	행	개	정	안
-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취득보조금(주택가액의 5% 범위 내) 지급시 증여세 비과세</li> </ul>		-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(전세가액의 10% 범위내)을 추가		

#### <개정이유>

-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기금의 주택 전세자금지원활동에 대하여도

비과세 혜택 부여

### 5. 배우자·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의제 범위조정

현	행	개	정	안
- 배우자·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,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다음의 경우는 제외 ○ 경매·공매·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○ 부동산등을 교환하는 경우		- 배우자·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도 ○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소유 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		

### 6. 연부연납시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 평가기준

현	행	개	정	안
- 상속세 연부연납시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○ 담보가액의 평가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 가액기준		-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○ 담보가액의 평가는 과세기준이 된 공시지가 적용		

<개정이유>

- 상속세 연부연납시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
  - 과세기준이 된 공시지가가 담보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백히 규정

## IV. 납세절차의 간소화 및 납세편의 도모

## 1. 사업자에 대한 납세절차 간소화

### 가. 사업자의 주소지 및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

현	행	개	정	안
-사업자가 주소지 변경시 2회 신고 ○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○ 변경후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		-1회 신고(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) ○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		
-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2회 신고 ○ 이전전 및 이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		-이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		

### 나.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제출제도 개선

현	행	개	정	안
-계산서 제출시간 ○ 매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제출(연 4회)		○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(연 1회) ※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과 일치		

### 다.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개선

현	행	개	정	안
-모든 사업자는 년 2회 사업자등록증 검열의무 ○ 미검열시 가산세 부과 * 기 간 1. 1~1. 31 7. 1~7. 31		-신규사업자에 한하여 개업후 1년간(2회)만 검열의무		



라.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

현	행	개	정	안
- 수출재화임가공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2가지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○ 임가공계약서 사본 ○ 납품사실증명원 또는 수출대금 입금 증명원		- 수출재화	임가공사업자가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제출 면제	

## 2.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 절차의 간소화 대상확대

현	행	개	정	안
<p>〈납세완납증명서 발급절차〉</p> <p>- 각 사업장 관할세무소를 경유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,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</p> <p>○ 다만,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4개 이하인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경유절차를 생략</p>			(추 가)	○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경유절차 생략 대상에 공공성이 높은 법인(금융기관 등)으로서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을 추가

### 〈개정이유〉

- 체납가능성이 거의없는 공공성이 높은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불편제거

### 3. 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제도 도입

현	행	개	정	안
-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		-자동이체납부제도의 도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
		-자동이체납부 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(년 1회)</li> <li>○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 (년 2회)</li> </ul>

### 4.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수납대상 확대

현	행	개	정	안
-국세체납일로부터 1월이내의 체납국세만 금융기관이 수납가능	〈체납국세의 수납〉	-국세체납일로부터 1월이상 경과된 체납국세 (50만원 미만)도 금융기관이 수납가능		

## V. 지역균형발전 지원

### 1.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「대도시 소재공단」의 범위조정

현	행	개	정	안
-공장을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손비인정, 공장양도차익 감면등 세제지원				
-대도시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소재공단				〈추 가〉
○ 수도권:반월공단, 인천남동유치지역, 서울남부 철도화물기지				○ 수도권:인천주물지방공단
○ 부 산:신평·장림공단				
○ 광 주:하남공단				
○ 대 전:대전 제3공단, 대전 제4공단				○ 광 주:평동지방공단

〈개정이유〉

- 대도시권내에 소재하는 여타 공단과의 형평유지

**2.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**

현	행	개	정	안
- 지역축협이 생산·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'92. 12. 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				-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년간 연장

〈개정이유〉

- 사료가격인상요인을 해소하여 영세축산농가 지원

**3. 제주개발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**

〈법 개정내용〉

-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「대통령령이 정하는 자」에게 「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」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50% 감면
--

- 사업시행자의 범위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및 제주도 농어민단체로서 제조·가공단지의 사업시행자

〈개정이유〉

- 공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공공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감면토록 함으로써 감면을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함

- 감면대상토지

- 「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 + 5년이상 제주도에 주거한 자」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

〈개정이유〉

-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감면혜택이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함

VI. 기타 현행제도의 보완

1. 석유류의 강력세율 적용시한 연장

현	행	개	정	안
〈석유류의 탄력세율 제도〉				
- 적용대상 ○ 휘발유    { 유연:130%(100%) { 무연:109%(100%) ○ 경유 : 9%(10%) ○ LPG:8%(10%) * ( )은 기본세율	- 적용대상	좌    동		
- 적용시한 ○ '92. 1. 1~'92. 12. 31	- 적용시한 ○ '93. 1. 1~'93. 12. 31 (1년간 연장)			

〈개정이유〉

- 휘발유는 전액 도로 및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되고
- 경유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

## 2.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「공과금」의 범위조정

현	행	개	정	안
- 공과금의 범위 ○ 상공회의소 회비 ○ 조합비 또는 협회비 ○ 수입업자가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○ 축산진흥기금,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하는 금액등 30개 부담금		- 공과금의 범위에 다음의 부담금 등을 추가 ○ 교통유발부담금 ○ 장애인고용부담금 ○ 환경개선부담금 ○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○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출연금 ○ 단자사등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		

### <개정이유>

- 법령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되는 각종 부담금등을 세법상의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의 손비로 인정

## 3. 금융기관의 「차입금」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불인제도 보완

현	행	개	정	안
-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·보유하는 경우 ○ 비업무용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-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○ 출자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하거나 타법인 주식등을 보유시에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		- 금융기관의 차입금중 다음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에서 제외 ○ 한은차입금, 재특회계차입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특정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전대자금 ○ 일반 수신자금 → 현재도 유권해석에 의해 차입금에서 제외		

### <개정이유>

- 금융기관은 수신·여신·환입무등 「자금의 중개업무」가 고유업무이며 은행법등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.

-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운용용도가 제한된 정책자금은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구입에 사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에서 제외

#### 4.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정

현	행	개	정	안
-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락·서어비스업</li> <li>○ 음식점업·숙박업</li> <li>○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</li> <li>○ 관광유람선업</li> <li>○ 목욕장업·안마업</li> </ul>				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

#### <개정이유>

-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(여행수지개선대책)
- 여신관리규정에서도 관광호텔에 대한 여신은 금지되고 있지 않음
  - ※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내용
    - 국내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기업의 1/2수준으로 축소
    - 매출액의 2%를 초과하는 국내광고선전비는 손비부인
    - 차입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기업이 타법인주식취득, 가지급금 지출등의 경우 지급이자 손비부인(일반법인: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인 경우)

#### 5.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장외등록법인의 범위 규정

##### —<법 개정내용>—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상장법인과 같이
  - 소액주주 : 20% 원천징수 분리과세
  - 대 주 주 : 20% 원천징수후 종합과세

-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장외등록법인의 범위

- 중소기업 해당 법인
- 은행법에 의한 은행

## 6. 원천분리과세되는 특수채등의 범위확대

현	행	개	정	안
-분리과세 대상채권 ○국채, 지방채, 회사채 (소액공모분), 특수채(영 193)				〈추 가〉 · 기술개발금융채권 (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)
-분리과세 대상복권: 주택복권, 체육복권, 엑스포복권				· 고속철도건설채권 (고속철도건설공단) · 용지보상채권(대한주택공사)
				〈추 가〉 · 기술개발복권 (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)

※ 채권 및 복권에 대한 과세제도

- 분리과세대상 채권:20% 원천분리과세
- 분리과세대상 복권:25% 원천분리과세
- 기 타:25% 원천징수후 종합과세

## 7. 특별상각 적용대상 주차시설의 범위확대

현	행	개	정	안
○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00% (기계식 주차시설은 50%) 특별상각 허용				○ “주업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상각 허용 ※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

〈개정이유〉

-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

## 8.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등

—〈법 개정내용〉—

- 일반 가게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 신설
  - 적용대상사업자, 적용품목, 공제금액에 관하여는 “대통령령”으로 위임

### (1) 적용대상사업자

-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
-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
-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
-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

### (2) 적용대상 품목

- 고철, 폐지, 폐유리, 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, 폐금속캔, 중고자동차등

### (3) 매입세액공제금액

- 폐자원 매입가액의 10/110

## 9.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적용

현	행	개	정	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모 및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</li> <li>◦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「1세대 1주택비과세」 적용을 받을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칠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던 주택을 합친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1세대1주택 비과세」 적용</li> </ul>			



※ 사위가 장인·장모를 모시는 경우 및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 포함

※ 30세미만으로 미혼이거나, 소득이 없는 자는 별도세대 불인정(부모와 같은 세대구성)

#### <개정이유>

-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전래의 미풍양속 계승을 지원
-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유지

**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**